



채 무 이 행 지 급 보 증 서

보증서번호 제 202200067789 호

보 증 금 액	일금 팔백칠십칠만오천사백팔십원	(₩8,775,480)
채 무 금 액	일금 팔백칠십칠만오천사백팔십원	(₩8,775,480)
계 약 금 액	일금 팔백칠십칠만오천사백팔십원	(₩8,775,480)
계 약 명	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	
계 약 일	2021 년 12 월 30 일	
계 약 이 행 기 일	2025 년 03 월 02 일	
보 증 기 간	2022 년 03 월 24 일 부터 2025 년 03 월 02 일 까지	
계 약 자	상 호 한신공영(주)	대 표 자 선홍규
특 기 사 항	1. 이 보증서는 임시급수보증금 납부채무를 보증합니다.	

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.

2022 년 04 월 04 일

강동수도사업소 귀하



발급영업점 : 서초지점, 02-3449-2140
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7층
 강남보상센터 : 02-3449-8750
 고객상담실 : 1588-1444

이사장 박 영 빈
 대리인 서초지점장 서인열
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.



※ 보증서 발급사실 및 약관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(www.cgbest.c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우리 조합은 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채무이행보증약관

제1조 (보증책임) 건설공제조합(이하 “조합” 이라 한다)은 계약자(이하 “채무자” 라 한다)가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내용상의 의무를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“보증사고” 라 한다) 그 상대방(이하 “보증채권자” 라 한다)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2조 (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)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2.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3. 보증서를 보증목적(주계약내용)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4.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

제3조 (보증채무의 이행한도)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채무의 미지급금 또는 해당 사업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.

제4조 (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)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,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

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제5조 (보증서의 효력상실)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, 주계약에서 정한 내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. 다만,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제6조 (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)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,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보증서 또는 그 사본
2.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
4. 그 밖에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

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제7조 (보증채무의 확인조사)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제8조 (보증금 지급시기)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,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9조 (대위 및 구상)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
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)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.

제11조 (관할법원 및 준거법)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



영 수 증(산정내역)

(2022. 04. 04)

조 합 원	NO. 00502	상호 : 한신공영(주)
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

과 목	채무이행지급보증				
대체과목	보통예금				31,010
					0
					0
(일부) 현금 입금					
보증서번호 (거래번호)	산출근거금액	기 간	일수	요율	수입금액
202200067789	8,775,480	2022-03-24 ~ 2025-03-02	1075	0.1199	31,010
			합 계		31,010
적 요	(202200067789)[강동수도사업소]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(신규) (보증서확인번호 :WBJ46-16490-52135-75612)				

※ 위 금액을 정히 영수(계산)함.



서초지점
사업자등록번호 : 214-85-02773

